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정정당당 성과보수 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□ 정정 사유 : ①운용기간 3년 경과에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
(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: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(2등급) → 수익률 변동성 기준(3등급))

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
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④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□ 효력발생일 : 2020. 6. 10.

□ 정정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운용기간 3년 경과에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2 등급(높은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</u> 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운용기간 3년 경과에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2 등급(높은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</u> <u>3 등급(다소 높은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기준일 기재	-	<u>2020.5.31 기준</u> <u>2020.4.30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31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2. 29 기준	<u>2020. 5. 31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
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2. 29 기준	<u>2020. 5. 31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2020. 2. 29 기준	<u>2020. 5. 31 기준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추가	-	<u>누락 기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1) 주식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 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 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 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)	<u>1) 주식 :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 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권예탁증권(주권상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 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 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 모주)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 합한 투자자 유형	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 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 준 및 투자위험등급 변경 위험등급 변경 내역	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투자위험등급 : 2 등급(높 은 위험)	<u>수익률변동성 표준편차 : 11.44 % 투자위험등급 : 3 등급(다 소 높은 위험)</u> <u>2020.6.10. : 2 등급 → 3 등급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31 기준</u>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1. 재무정보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31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31 기준</u>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3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0.5.31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20. 2. 29 기준</u>	<u>2020. 5. 31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<u>한국예탁결제원</u>	<u>전자등록기관</u>
나. 주요 업무			
(3) 업무위탁			
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			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	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
가. 수익자총회 등 (3)수익자총회 결의사항		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	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 의 소집통지를 <u>전자등록기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<u>관</u> 에 위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.
		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	-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/ 신탁업자의 변경 /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) / 투자신탁종류의 변경/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/

<p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 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 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 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</p>	<p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의 변경(법령 제 80 조 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 로 인한 경우만 해당) / 집 합투자업자 변경 / 환매금 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/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/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</p>
---	---

〈신 설〉

- 다만,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

1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
2.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3.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,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

-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

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

1. 대상금액 :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(자문료, 시스템개발비 등)을 포함

2. 대상기간 : 변경 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

-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법제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	한국예탁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	전자등록기관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
가. 정기보고서			
(2) 자산운용보고서			
(3) 자산보관·관리보고			

서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한국예탁원 전자등록기관
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반영

나. 수시공시

(1) 신탁계약변경에 관한

공시
